|  |  |  |
| --- | --- | --- |
| **일부 증치세 우대정책 심사비준사항 폐지 후 관련 관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38호  <국무원의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 등 사항의 폐지 및 조정에 관한 결정>(국발[2015] 11호)에 근거하여, 경매회사가 경매한 면세화물의 증치세 징수면제 등 5개 항목의 증치세 우대정책 집행과정과 관련된 심사결정, 심사비준 업무절차는 이미 폐지되었으며, 그 후속관리사항의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는 아래의 열거한 증치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수심사결정, 심사비준 업무절차는 폐지되고, 비안관리로 변경한다.  (1) 식량비축 임무를 담당하는 국유식량기업, 면세항목을 경영하는 기타식량경영기업 및 정부비축식용식물유 판매업무기업의 증치세 징수면제에 관한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2) 경매회사가 경매하는 면세화물의 증치세 징수면제에 관한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3) 종군가족 취업의 증치세 징수면제에 관한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4) 자발적으로 선택한 군대전업간부 취업의 증치세 징수면제에 관한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5) 스스로 직업을 찾는 도시 퇴역사병 취업의 증치세 징수면제에 관한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2. 납세자는 상술한 증치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비안수속을 처리한다.  (1) 납세자는 최초 납세신고기간 내에 세수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신고자료의 일부분인 비안문건을 함께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한다.  매번 납세기간 내, 경매회사의 경매면세 화물업무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납세신 고처리 시, 주관세무기관에 면세비안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납세자는 감면세 조건이 부합하는 기간 내에, 비안자료에 내용이 변경이 없을 경 우 1회성 비안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제출한 비안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지만, 여전히 감면세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변경된 다음달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변경비안을 진행한다. 만약 감면세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감면세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한다.  3. 납세자는 비안자료에 대한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  4. 납세자가 제출한 비안자료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감면세의 항목, 근거, 범위, 기한 등  (2) 감면세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률, 법규, 규장 및 규범성문건이 요구하는 제출자료  5.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비안자료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내리고, 납세자가 진실하게 신고할 책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6. 본 공고가 시행되기 전, 납세자가 받았던 상술한 증치세 우대정책과 관련된 심사결정, 심사비준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재비안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공고가 시행된 후, 납세자는 감면세 조건, 내용에 변경사항에 생길 경우 본공고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비안자료를 제출하고,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비안수속을 처리한다.  7.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각 지역에서 상술한 증치세 우대정책과 관련된 세수심사결정, 심사비준업무 절차 폐지 후의 후속관리 조치에 관한 보충내용을 제정한다.  8. 본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식량기업증치세의 증치세 징수면제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자[1999]198호) 제5조 중 " 식량비축임무를 담당하는 국유식량 구매기업과 본 통지에 열거한 면세항목의 기타식량경업기업 및 정부 비축식용식물유 판매업무의 기업은 모두 주관세무기관을 심사결정을 거쳐 면세자격을 인정받고, 주관세무기관을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 받을 수 없음" 과 "국가세무국 심사결정 중 업무착오로 면세혜택을 받은"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경매회사가 취득한 경매수입의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국발세[1999]40호)제1조 중 "경매회사 지방현급 주관세무기관에 비준을 거친"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철도운수 및 우정사업에 납입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여 징수하는 시행의 관한 통지>(재세[2013]106호)첨부3 제1조 제(10)항 중"그러나 세무부문은 관련된 심사를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제(11)항 중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와 제(12)항 중 "세무기관의 심사결정"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5월19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明确部分增值税优惠政策审批事项取消后有关管理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38号  　　根据《国务院关于取消和调整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国发〔2015〕11号），拍卖行拍卖免税货物免征增值税等5项增值税优惠政策执行中涉及的审核、审批工作程序已取消，现就其后续管理事项公告如下：  　　一、纳税人享受下列增值税优惠政策，其涉及的税收审核、审批工作程序取消，改为备案管理。  　　（一）承担粮食收储任务的国有粮食企业、经营免税项目的其他粮食经营企业以及有政府储备食用植物油销售业务企业免征增值税的审核。  　　（二）拍卖行拍卖免税货物免征增值税的审批。  　　（三）随军家属就业免征增值税的审批。  　　（四）自主择业的军队转业干部就业免征增值税的审批。  　　（五）自谋职业的城镇退役士兵就业免征增值税的审批。  　　二、纳税人享受上述增值税优惠政策，按以下规定办理备案手续。  　　（一）纳税人应在享受税收优惠政策的首个纳税申报期内，将备案材料作为申报资料的一部分，一并提交主管税务机关。  　　每一个纳税期内，拍卖行发生拍卖免税货物业务，均应在办理纳税申报时，向主管税务机关履行免税备案手续。  　　（二）纳税人在符合减免税条件期间内，备案资料内容不发生变化的，可进行一次性备案。  　　（三）纳税人提交的备案资料内容发生变化，如仍符合减免税规定，应在发生变化的次月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进行变更备案。如不再符合减免税规定，应当停止享受减免税，按照规定进行纳税申报。  　　三、纳税人对备案资料的真实性和合法性承担责任。  　　四、纳税人提交备案资料包括以下内容：  　　（一）减免税的项目、依据、范围、期限等；  　　（二）减免税依据的相关法律、法规、规章和规范性文件要求报送的材料。  　　五、主管税务机关对纳税人提供的备案材料的完整性进行审核，不改变纳税人真实申报的责任。  　　六、本公告施行前，纳税人享受上述增值税优惠政策已经履行了相关审核、审批程序的，可不再办理资料备案。但本公告施行后，纳税人减免税条件、内容发生改变的，则应按本公告规定，向主管税务机关提交备案资料，办理享受优惠政策备案手续。  　　七、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可按本公告规定，补充制定本地区上述增值税优惠政策涉及的税收审核、审批工作程序取消后的后续管理措施。  　　八、本公告自公布之日起施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粮食企业增值税征免问题的通知》（财税字〔1999〕198号）第五条中“承担粮食收储任务的国有粮食购销企业和经营本通知所列免税项目的其他粮食经营企业，以及有政府储备食用植物油销售业务的企业，均需经主管税务机关审核认定免税资格，未报经主管税务机关审核认定，不得免税”及“经国家税务局审核无误后予以免税”内容同时废止。  　　《国家税务总局关于拍卖行取得的拍卖收入征收增值税、营业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发〔1999〕40号）第一条中“经拍卖行所在地县级主管税务机关批准”内容同时废止。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将铁路运输和邮政业纳入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3〕106号）附件3第一条第（十）款中“但税务部门应当进行相应的审查认定”、第（十一）款中“经主管税务机关批准”和第（十二）款中“税务机关审核”内容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5年5月19日 |